##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02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조정식・박성준・김회재

유동수 · 송갑석 · 이용우

정일영 · 임호선 · 양경숙

양향자 의원(10인)

###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이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국내 타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해외 특구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 거점으로써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함(안 제3조의4).
-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중점특화산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7).
- 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에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함 (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를 "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산업의 혁신생태계 를 조성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 8. "중점특화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9. "혁신생태계"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

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3. 해당 지역 내 중점특화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5. 중점특화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7(중점특화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점특화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점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점특화산업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
-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하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이라 한다)
- 4.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하 "중점특화산업 투자기업"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로, "설치 및 운영에"를 "설치·운영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성화 및 외국 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를 "제3조의4·제27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	제1조(목적)
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u>생활여건을 개선함으</u>	<u>생활여건 개선 및 외국</u>
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산
<u>나아가</u>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함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州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u>&lt;신 설&gt;</u>	8. "중점특화산업"이란 경제자
	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
	하여 특화시키고자 하는 산업
	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
	된 산업을 말한다.
<u>&lt;신 설&gt;</u>	9. "혁신생태계"란 기업, 연구
	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신 설>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하여 혁신성장 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사항
  - 3. 해당 지역 내 중점특화산업유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사항
  -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 역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u>구청장(자치구의 구청</u> <u>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5. 중점특화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
역의 협의)
<u>구청장</u>
1. ~ 3. (생 략)
제7조의7(중점특화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
도지사와의 협의와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
자유구역별 중점특화산업을 선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특화산업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 제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경제자</u> 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점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중점특화산업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 절차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조(	(세제 및	및 자금지	[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기업	<u> </u>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 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u>외국인투자</u> <u>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u> 유치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 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 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 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 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 인투자기업"이라 한다)
- 2.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 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 귀기업"이라 한다)
-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 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 업(이하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이라 한다)
- 4.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 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하 "중점특화산업 투자기업"이라 한다)

<u>운영에</u>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 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 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 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 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 설>

1.·2. (생략) <신설>

<u>설</u> 지·운영 및 혁신생태계	<u>소</u>
<u>성을 위해</u>	
③ (현행과 같음)	
<b>4</b>	
<u>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
업에	
<u>&lt;후단 삭제&gt;</u> <u>다만, 입</u>	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u>.</u>

- 1. 2.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재 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 유·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 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 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 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 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공 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 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 주외국인투<u>자기업에</u>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신설>

<u>6</u>
활성화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u>일</u>
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u> </u>

- 1. 2. (현행과 같음)
- 3.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 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 할 것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
기구) ① 시·도지사는 <u>제27조</u> ·	기구) ① <u>제</u> 3조의
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u>4·제27조</u>
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	
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	
구를 설치한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